

---

---

## ‘IP5 PPH’ 및 ‘글로벌 PPH’에 의하여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절차』

---

---

### I. 이 문서의 목적

이 문서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EPO), 일본 특허청이 시행에 합의한 선진 5개 특허청<sup>1)</sup> 특허심사하이웨이(이하 ‘IP5 PPH’라 함) 프로그램 또는 한국, 노르딕 특허기구,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호주 특허청이 시행에 합의한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이하 ‘글로벌 PPH’라 함)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인이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신청요건, 증빙서류 및 신청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P5 PPH 및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모두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인은 다음 II.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 또는 다음 III.의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에 의한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P5 PPH 프로그램은 2014년 1월 6일부터 3년간 시행되며,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2014년 1월 6일부터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행됩니다. 한국특허청은 IP5 PPH 및 글로벌 PPH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전면시행 등의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

1) IP5: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 5개 특허청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EPO), 일본 특허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

신청인이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유럽 (EPO), 이스라엘, 일본, 중국, 캐나다,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호주 특허청(이하 '대상 특허청'이라 함)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 다음의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

PPH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한국 특허출원(이하 '본원출원'이라 함)과 이에 대응하는 대상 특허청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함)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함)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1) 신청인은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에 대해 i) 최우선일과 ii) 두 출원의 관계를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요건을 만족하는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응출원에는 대상 특허청이 가장 최근의 심사통지서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어야 합니다.

(1) 대상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은 대상 특허청에서 특허결정된 청구항, 또는 대상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통지서에 특허가능한 청구항으로 명시한 청구항을 의미합니다.

(2) 대상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청구항도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상응하여야 하며, 상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도록 보정되어야 합니다.

- (1)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본원출원의 청구항이 동일하거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부가하거나 한정하여 청구범위가 좁아지는 경우를 청구항이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본원출원의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에는 청구항이 상응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응출원의 청구항이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본원출원의 청구항이 제조물에 관한 것인 경우, 양 청구항은 상응하지 않습니다.
- (2) 본원출원에는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모든 청구항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청구항 삭제 가능). 예를 들어 대응출원에서 5개 청구항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본원출원은 상기 5개의 특허가능한 청구항 중 3개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상응의 구체적인 예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출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PPH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가 되어 있거나, 우선심사신청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이미 심사가 착수된 상태에서도 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1), 2), 3), 4)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 및 작성 방법은 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응출원의 심사통지서 사본 및 그 번역문

- (1) 신청인은 대응출원의 심사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통지서는 실제심사(특허성 여부 판단과 관련된 심사)와 관련하여 대상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발송한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상 특허청의 심사통지서 예는 붙임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해당 통지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 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충분한 번역으로 인해 심사관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번역문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만약 심사관이 해당 통지서의 사본과 그 번역문을 대상 특허청의 심사정보열람시스템(DAS : Dossier Access System)을 통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각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심사정보열람시스템은 붙임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항의 사본 및 그 번역문

- (1) 신청인은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해당 청구항이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 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충분한 번역으로 인해 심사관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번역문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만약 심사관이 해당 청구항의 사본과 그 번역문을 대상 특허청의 심사정보열람시스템(DAS : Dossier Access System)을 통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각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심사정보열람시스템은 붙임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대응출원의 심사단계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 (1) 심사단계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은 해당 심사통지서에서 인용한 문헌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심사통지서에서 인용하지 않은 문헌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해당 심사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이 특허문헌인 경우, 특허청은 대부

분의 특허문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심사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이 비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허청이 해당 문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심사관이 해당 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행기술 문헌의 번역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4)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

- (1) 신청인은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본원출원 청구항 사이의 대응관계를 설명하는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이 대응관계 설명표에는 각 청구항마다 상응한다는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의 작성 방법 및 작성예는 붙임4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우선심사신청료 납부

신청인은 PPH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시 다른 우선심사신청과 동일하게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유의사항

PPH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별도의 우선심사 결정서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선심사를 통하여 조기에 심사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우선심사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PPH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게 되며,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선심사 신청이 각하됩니다.

### Ⅲ.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에 의한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

신청인이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스웨덴, 스페인, 유럽(EPO), 이스라엘, 일본, 중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특허청 및 노르딕 특허기구(이하 ‘대상 특허청’이라 함)에서 수행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국제출원이 있을 경우, 다음의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

PCT-PPH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한국 특허출원(이하 ‘본원출원’이라 함)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함)은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날)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1) 신청인은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에 대해 i) 최우선일과 ii) 두 출원의 관계를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요건을 만족하는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응국제출원에는 가장 최근의 국제단계의 심사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청구항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심사결과’란 다음 (1)~(3) 중의 어느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대상 특허청에서 대응국제출원의 국제조사가 수행되고, 국제조사 견해서(WO/ISA : 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에서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이 모두 있다고 판단 받은 경우

(2) 대상 특허청에서 대응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국제예비심사 견해서(WO/IPEA : 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y)에서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이 모두 있다고 판단 받은 경우

- (3) 대상 특허청에서 대응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 :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에서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이 모두 있다고 판단 받은 경우
- (4) 대응국제출원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 : 국제출원의 불명료 등에 관한 의견)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제8기재란의 의견에 적용받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 예비심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제8기재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PCT-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대응국제출원의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청구항과 상응하여야 하며, 상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도록 보정되어야 합니다.**

- (1) 대응국제출원의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청구항과 본원출원의 청구항이 동일하거나,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청구항을 부가하거나 한정하여 청구범위가 좁아지는 경우를 청구항이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응국제출원의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청구항과 본원출원의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에는 청구항이 상응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응국제출원의 청구항이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본원출원의 청구항이 제조물에 관한 것인 경우, 양 청구항은 상응하지 않습니다.
- (2) 본원출원에는 대응국제출원의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모든 청구항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청구항 삭제 가능). 예를 들어 대응국제출원에서 5개 청구항이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본원출원은 상기 5개의 청구항 중 3개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상응의 구체적인 예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원출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PCT-PPH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가 되어 있거나, 우선심사 신청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이미 심사가 착수된 상태에서도 PCT-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1), 2), 3), 4), 5)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 및 작성 방법은 붙임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응국제출원의 국제단계 긍정적 심사결과 관련 통지서 사본 및 그 번역문

- (1) 신청인은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국제조사 견해서, 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해당 통지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 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충분한 번역으로 인해 심사관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번역문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만약 심사관이 해당 통지서의 사본 및 그 번역문을 정보통신망(예 : PATENTSCOPE - <http://patentscope.wipo.int/>)을 통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대응국제출원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청구항의 사본 및 그 번역문

- (1) 신청인은 대응국제출원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해당 청구항이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 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충분한 번역으로 인해 심사관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번역문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만약 심사관이 해당 청구항의 사본과 그 번역문을 정보통신망(예 : PATENTSCOPE - <http://patentscope.wipo.int/>)을 통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대응국제출원의 국제단계 심사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 (1) 국제단계 심사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은 해당 견해서나 보고서에서 인용한



문헌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특허성 판단의 비교 자료로 사용되지 않은 문헌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해당 견해서나 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이 특허문헌인 경우, 특허청은 대부분의 특허문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견해서나 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이 비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허청이 해당 문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심사관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행기술문헌의 번역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4)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

- (1) 신청인은 대응국제출원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청구항과 본원출원 청구항 사이의 대응관계를 설명하는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이 대응관계설명표에는 각 청구항마다 상응한다는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의 작성 방법 및 작성예는 붙임5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제8기재란(Box VIII : 국제출원의 불명료 등) 관련

대응국제출원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 : 국제출원의 불명료 등에 관한 의견)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제8기재란의 의견에 적용받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 예비심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제8기재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만 PCT-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예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우선심사신청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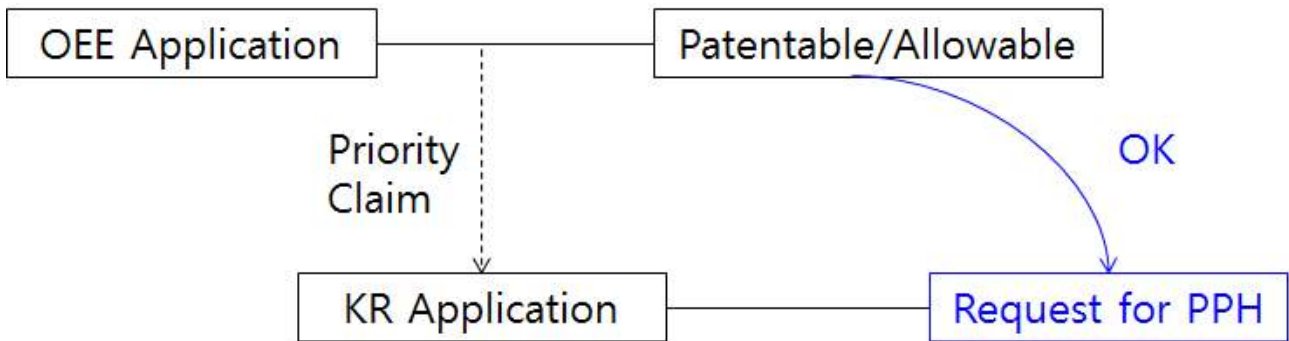
신청인은 PCT-PPH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시 다른 우선심사신청과 동일하게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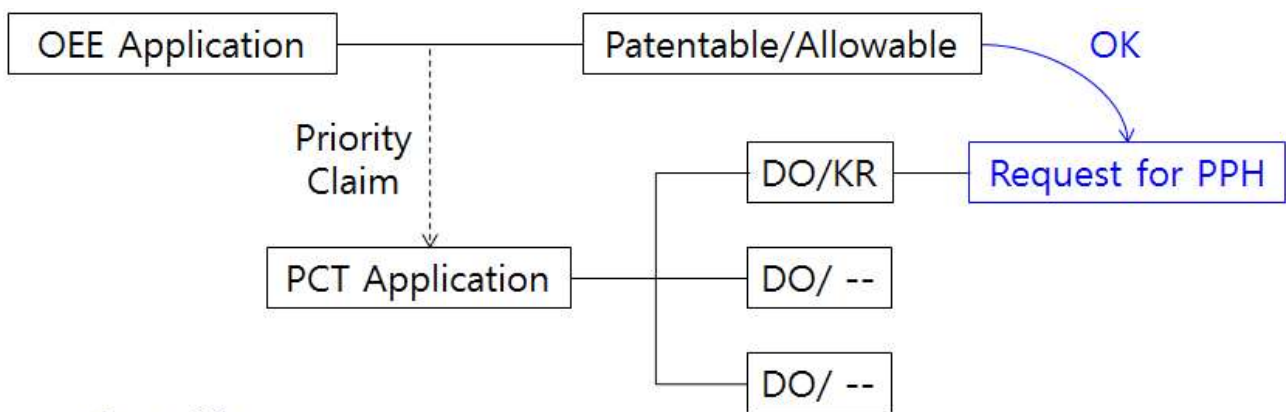
PCT-PPH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별도의 우선심사결정서가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우선심사를 통하여 조기에 심사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우선심사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PCT-PPH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게 되며,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선심사 신청이 각하됩니다.

**【붙임1】 PPH 대상 기본요건(Ⅱ.1.1))에 해당하는 출원의 예시2)**

1. 본원출원이 대응출원을 기초로 하여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그림 A, B,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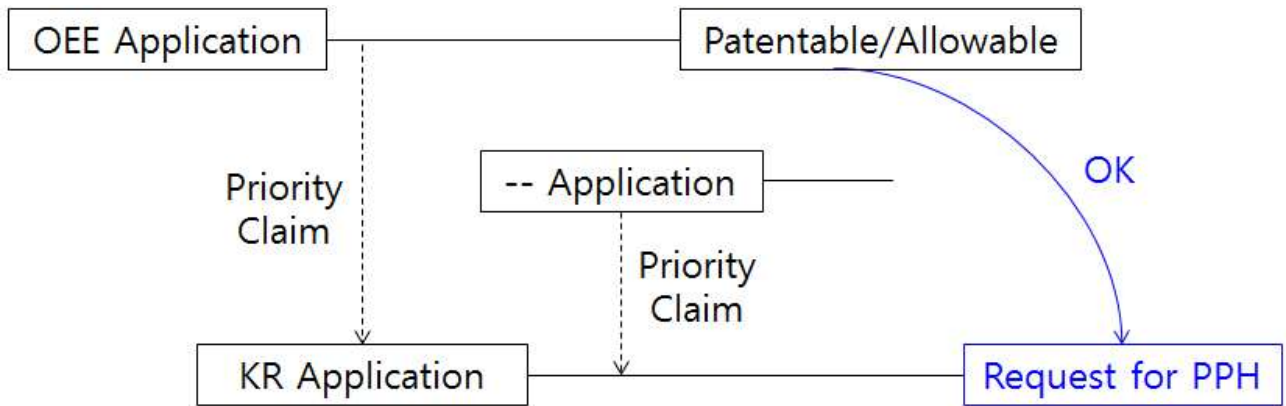
(A)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 : A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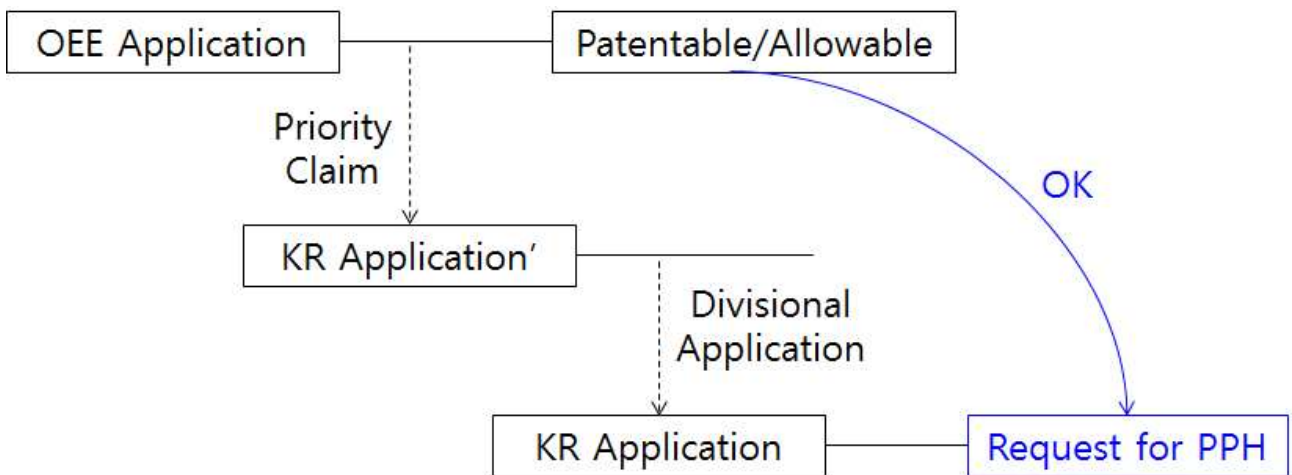
(B) 본원출원(DO/KR)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2) 제3국은 "--"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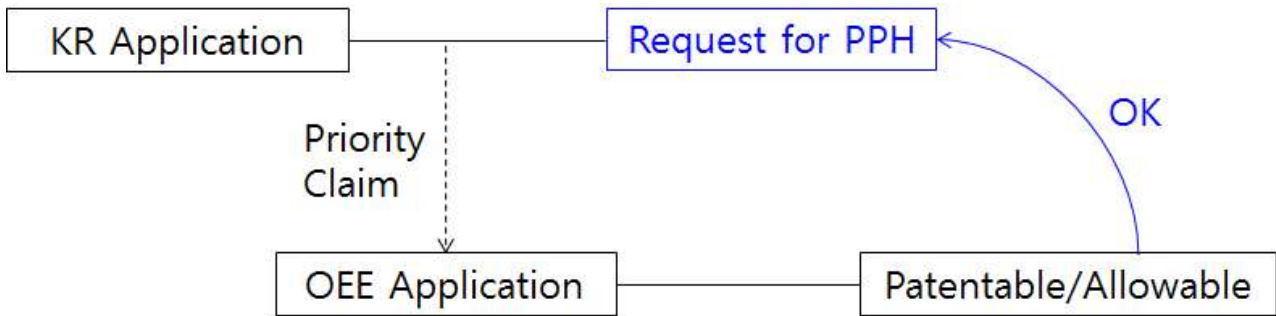
-- : Any office

(C)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파리조약에 의한 복수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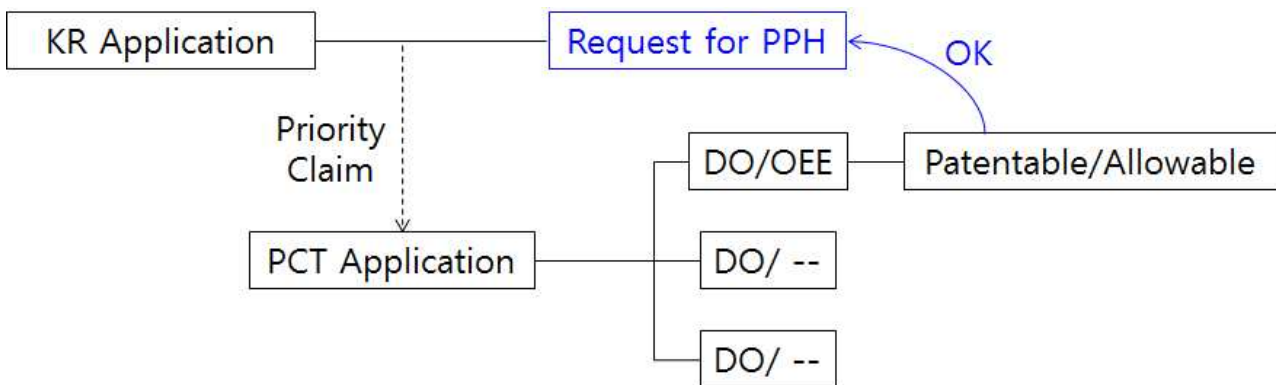


(D)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분할출원

2. 본원출원이 대응출원의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경우(그림 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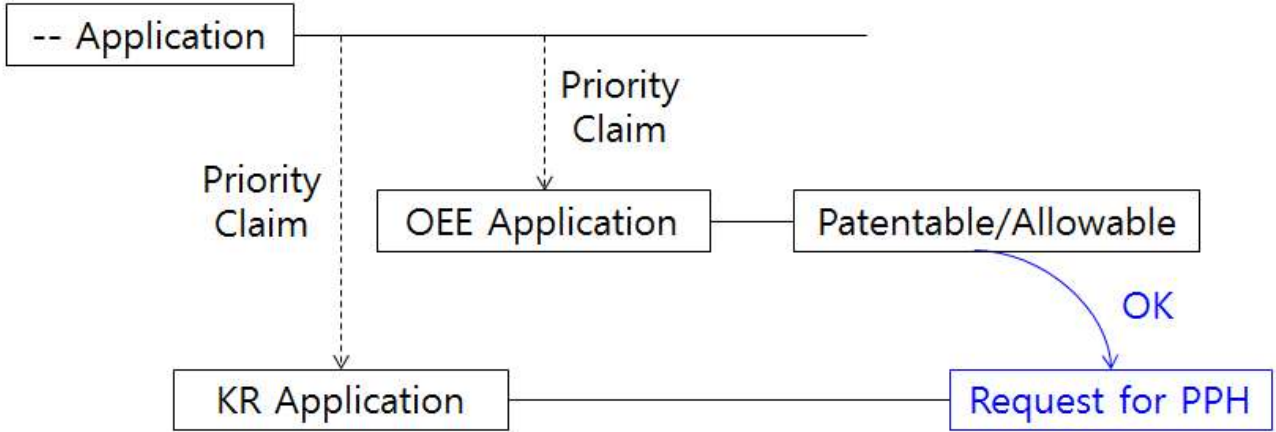
(E)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 : A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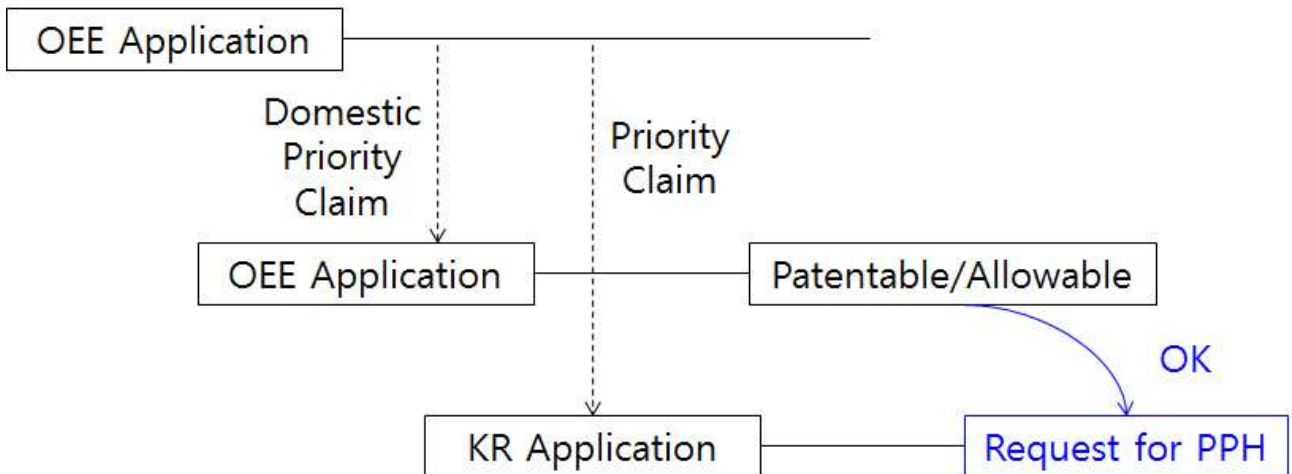
(F)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3.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공유하는 경우(그림 G, H, I, J, K, L,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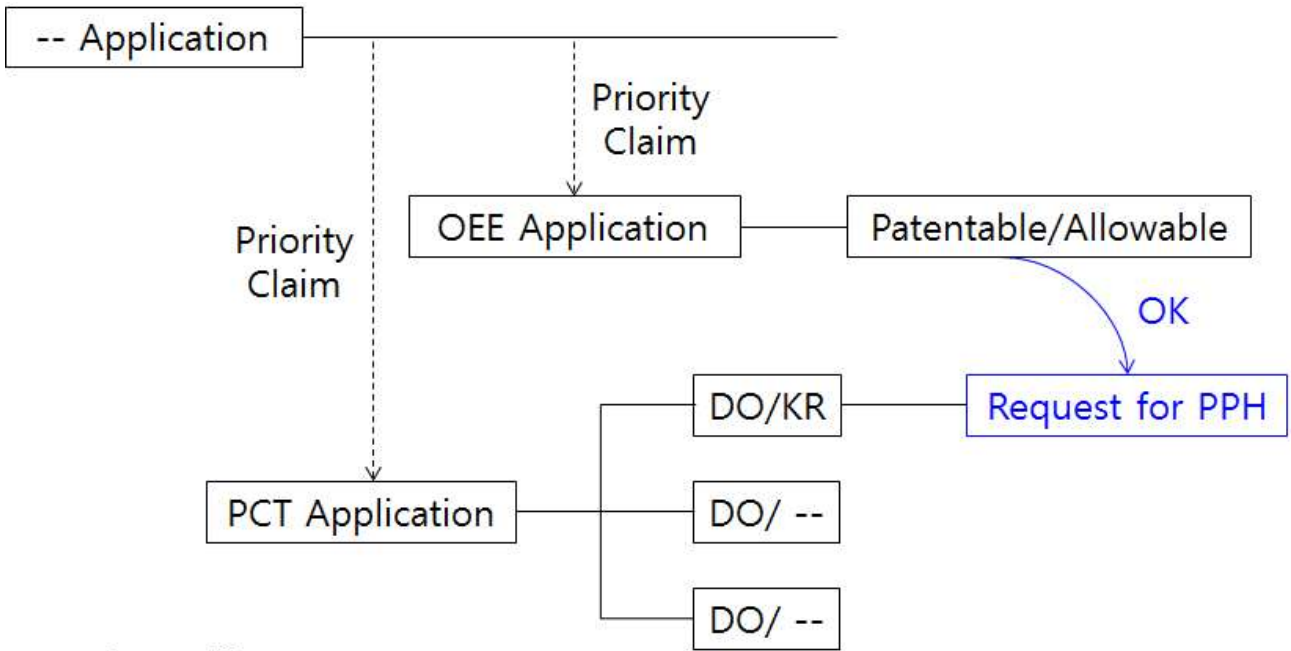


-- : Any office

(G)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최초 출원이 제3국인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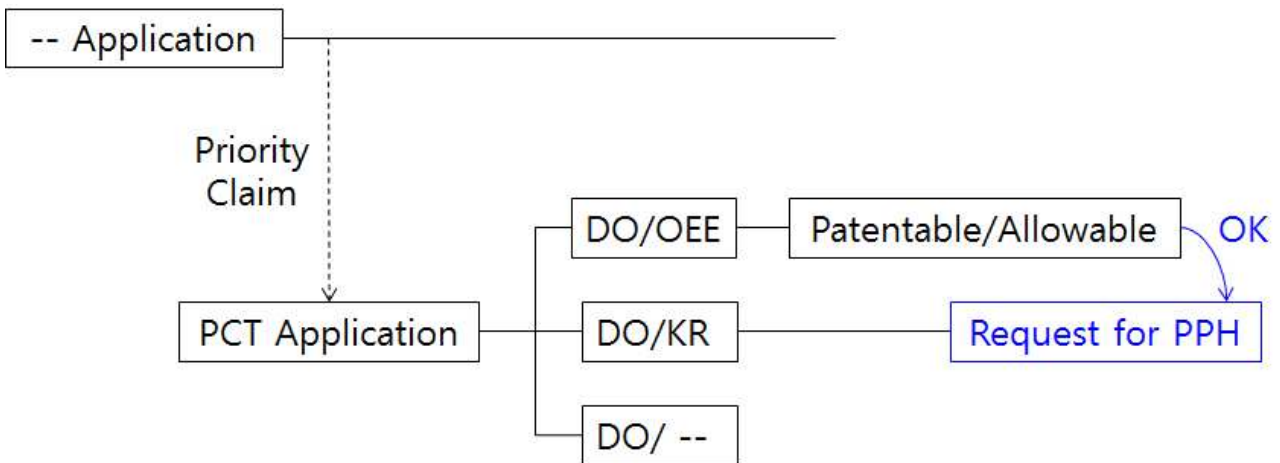


(H)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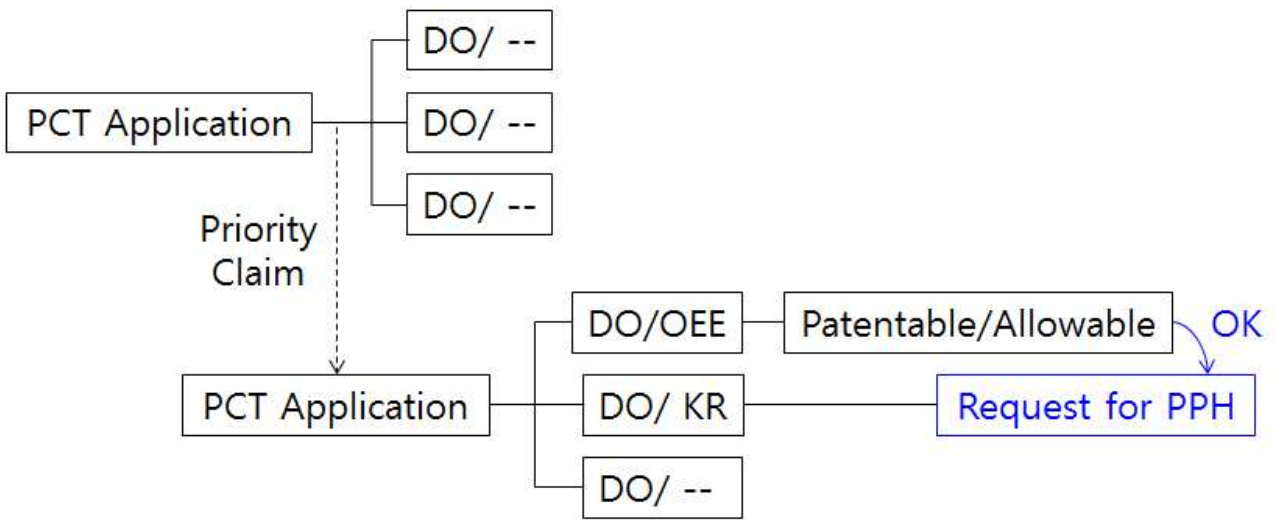
-- : Any office

(I) 본원출원(DO/KR)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이고, 최초 출원이 제3국인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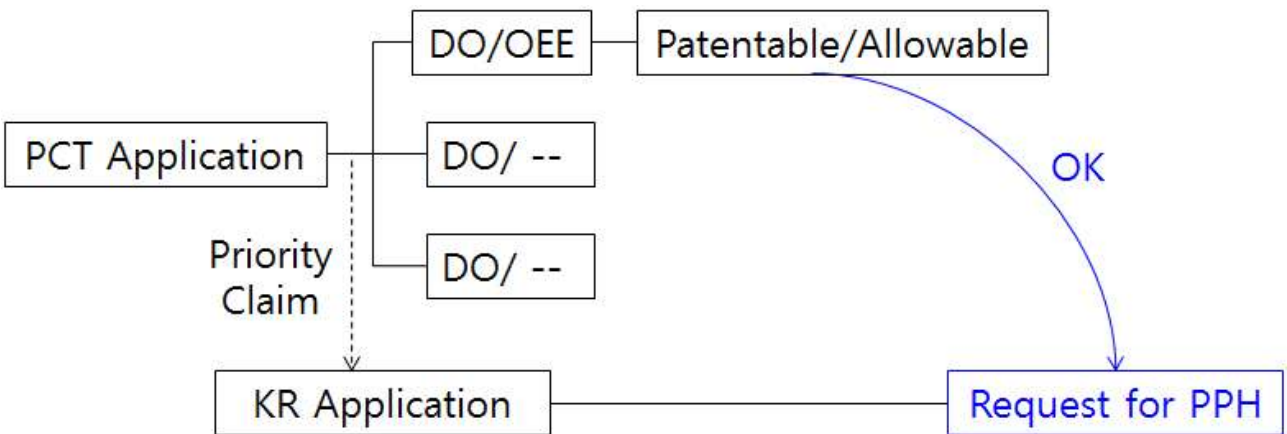
-- : Any office

(J) 본원출원(DO/KR)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 : A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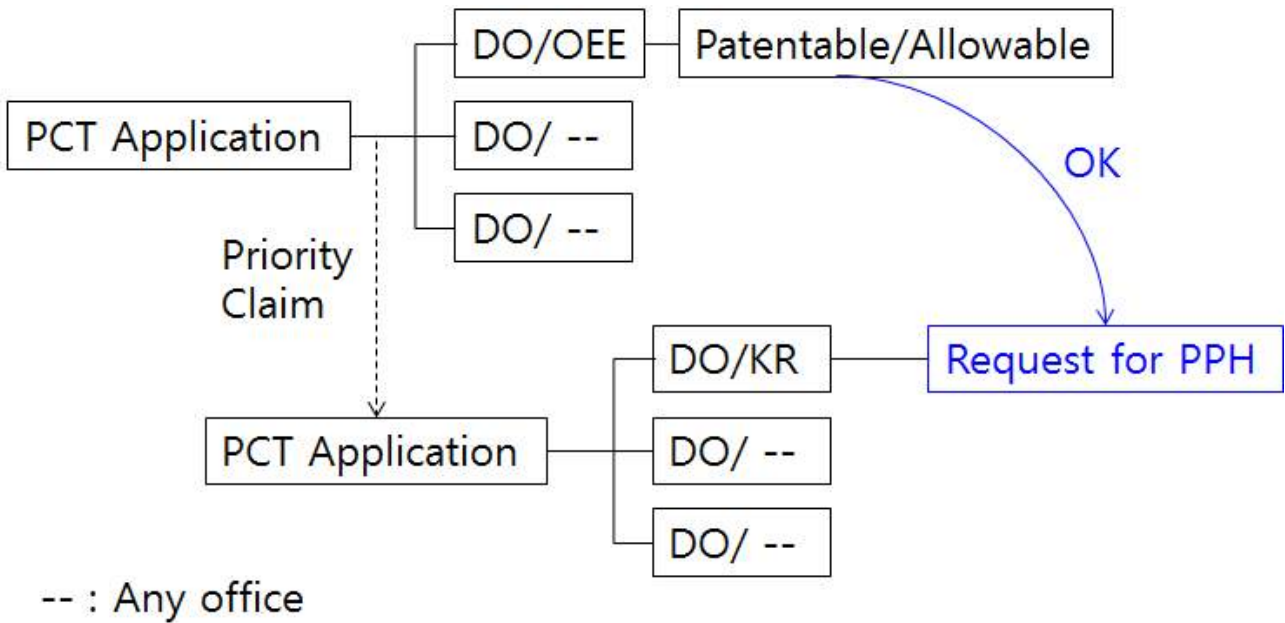
(K) 본원출원(DO/KR)이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 : A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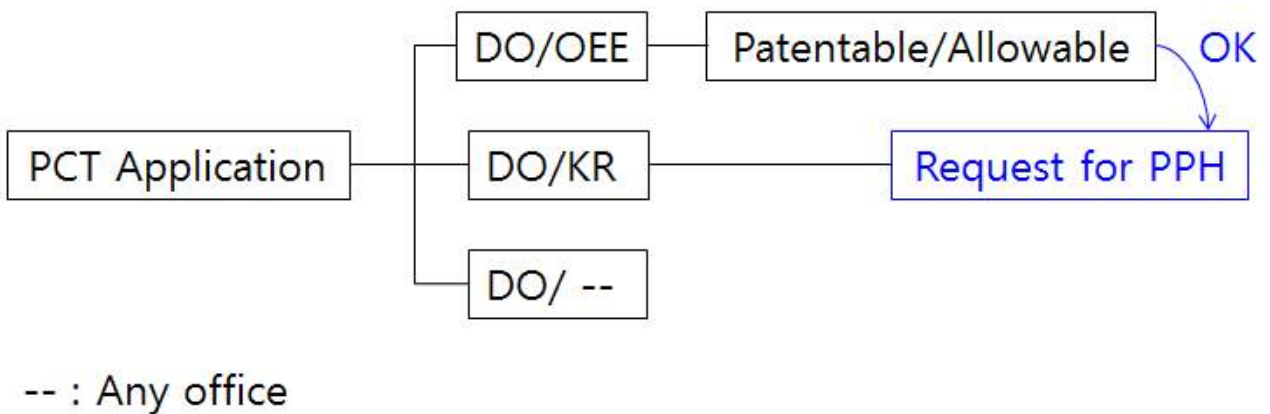
(L)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기초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





(M) 본원출원(DO/KR)이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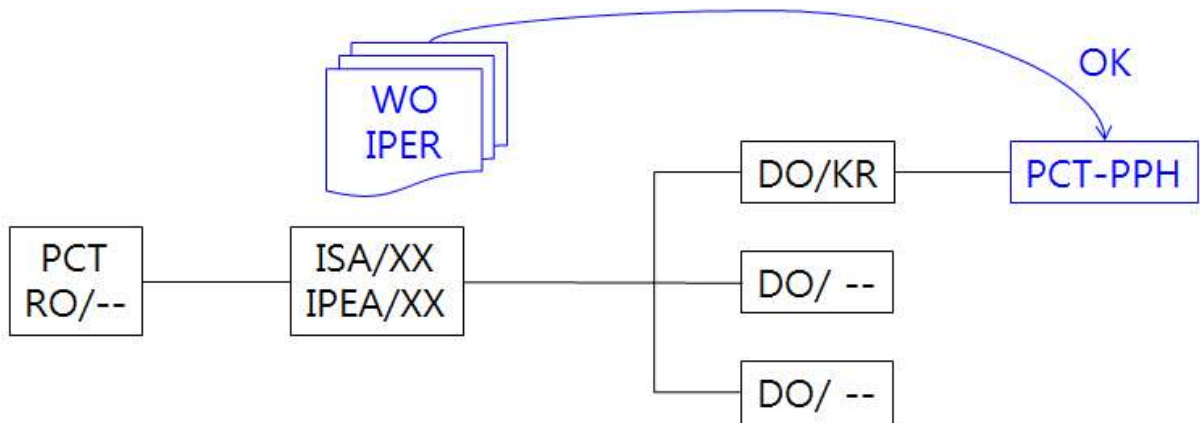
4. 본원출원과 대응출원 모두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일 경우(그림 N)



(N) 본원출원(DO/KR)이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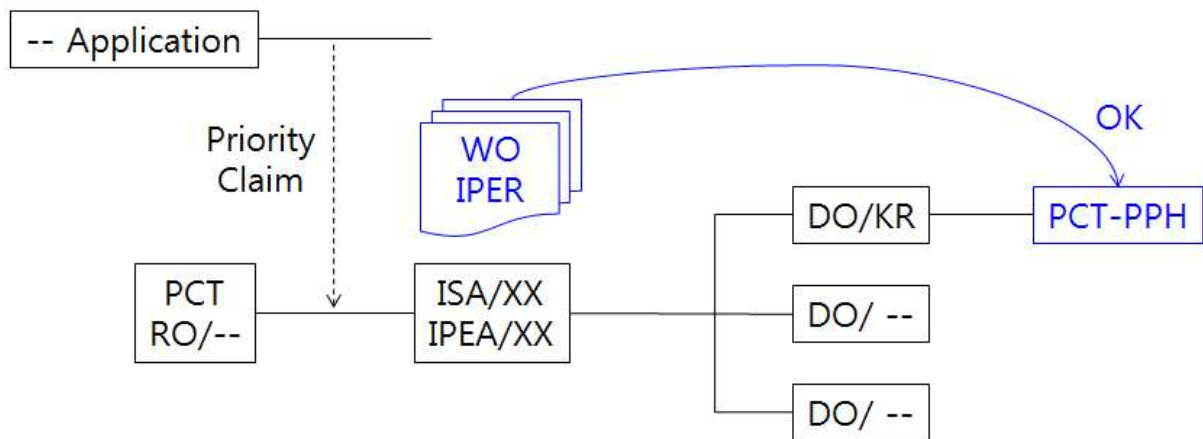
**【붙임2】 PCT-PPH 대상 기본요건(Ⅲ.1.1))에 해당하는 출원의 예시<sup>3)</sup>**

**1. 본원출원이 대응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인 경우(그림 A, B, C)**



-- : A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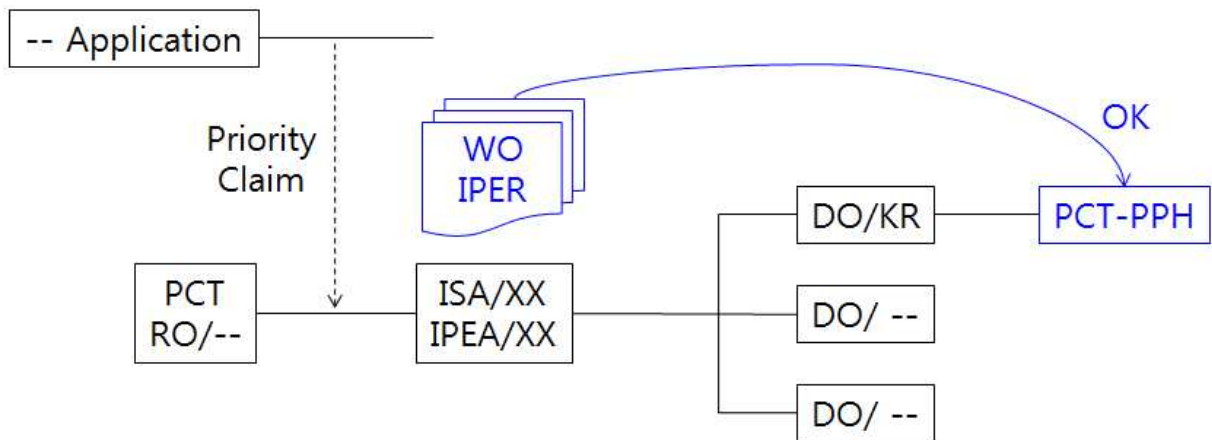
(A) 본원출원(DO/KR)이 대응국제출원(PCT RO/--)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 : Any office

(B) 본원출원(DO/KR)이 제3국(--의)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대응국제출원(PCT RO/--)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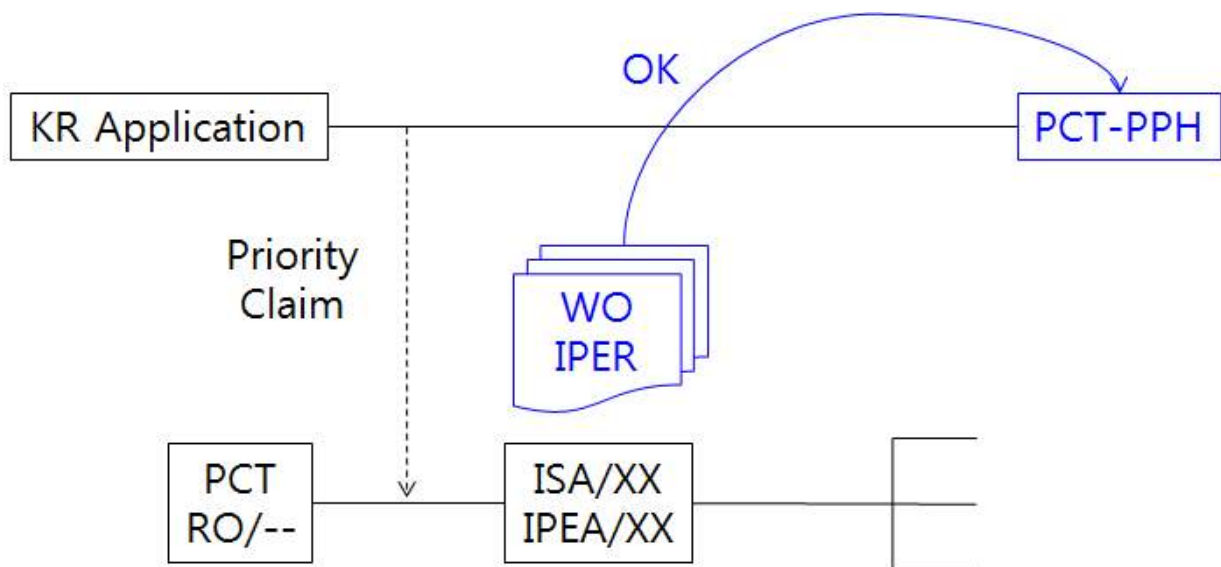
3) PCT-PPH 대상 특허청은 "XX"로, 제3국은 "--"로 표기



-- : Any office

(C) 본원출원(DO/KR)이 다른 국제출원(PCT' RO/--)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대응국제출원(PCT RO/--)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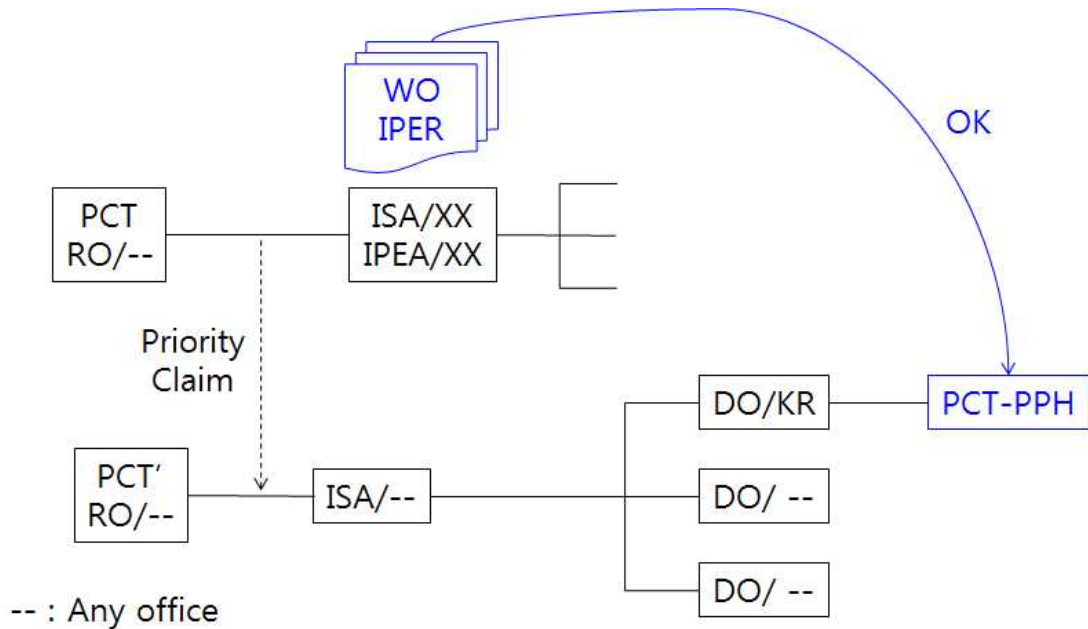
2. 본원출원이 대응국제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인 경우(그림 D)



-- : A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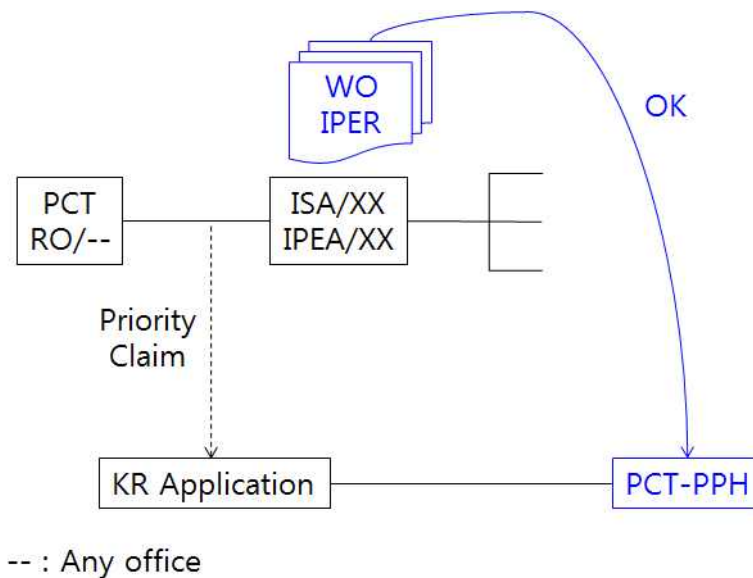
(D)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대응국제출원(PCT RO/--)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경우

3. 본원출원이 대응국제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인 경우(그림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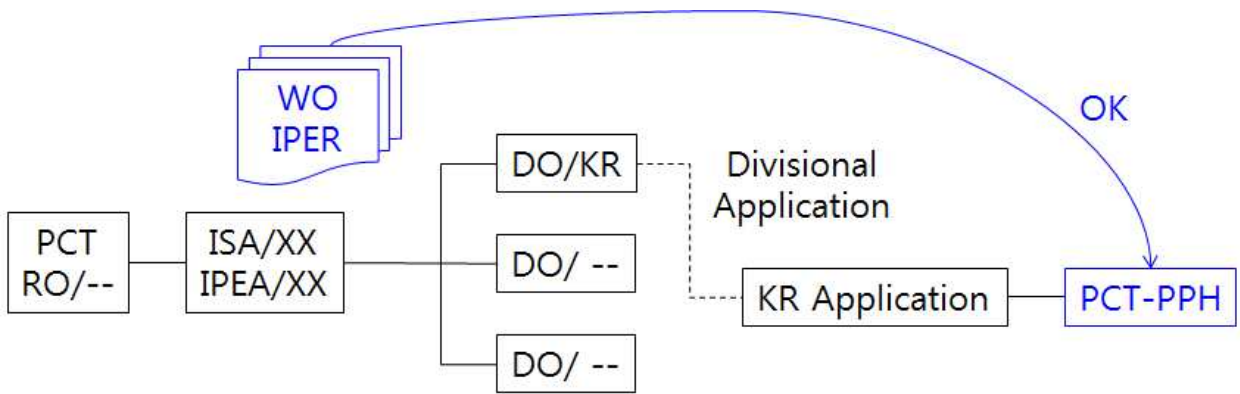
(E) 본원출원(DO/KR)이 대응국제출원(PCT RO/--)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한 국제출원(PCT' RO/--)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

4. 본원출원이 대응국제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 일반 출원인 경우(그림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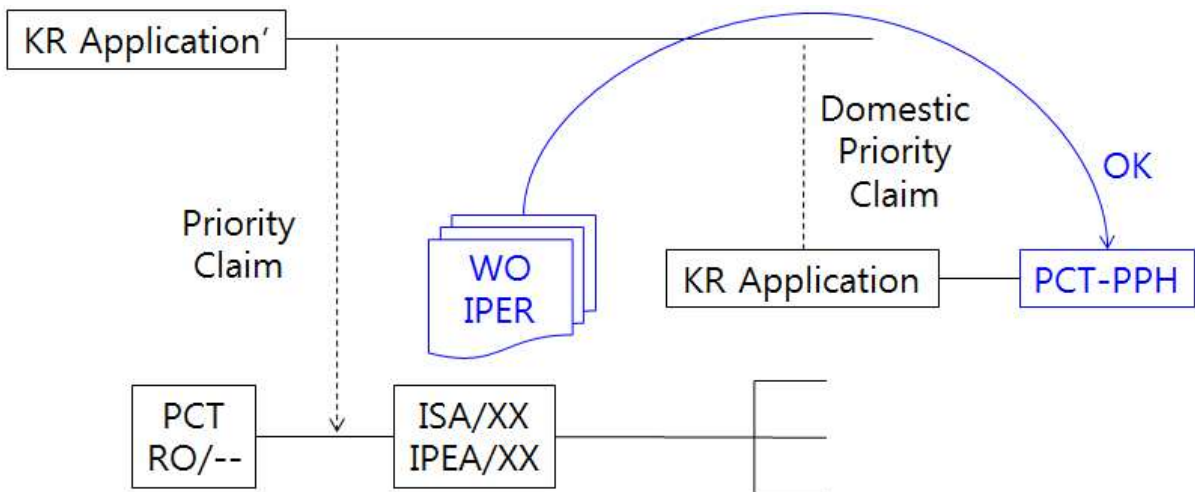
(F)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대응국제출원(PCT RO/--)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한 경우

5. 상기 1~4.의 예에 해당하는 본원출원의 분할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그림 G, H)



-- : An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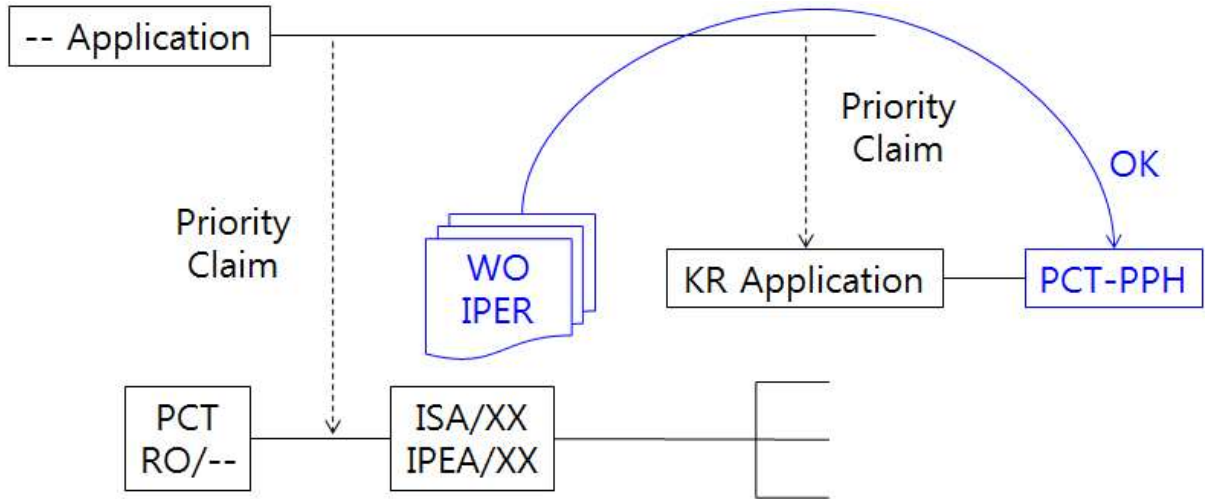
(G)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대응국제출원(PCT RO/--)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의 분할출원



-- : Any office

(H)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대응국제출원(PCT RO/--)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

6.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공유하는 경우(그림 I)



-- : Any office

- (I) 본원출원(KR Application)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최초 출원이 제3국인 출원

### 【붙임3】 청구항 상응 예시

#### 1. 청구항이 상응하는 경우

구분	대응출원 청구항		본원출원 청구항		청구항 상응 관계
	청구항	구성요소	청구항	구성요소	
사례1	1	A	1	A	동일
사례2	1	A	1 2	A A+a	동일 청구항2는 대응출원의 청구항1에 "a"를 부가
사례3	1	A	1	A	동일 기재형식의 차이(대응출원의 청구항3과 동일) 기재형식의 차이(대응출원의 청구항2와 동일)
	2	A+a	2	A+b	
	3	A+b	3	A+a	
사례4	1	A	1	A+a	청구항1은 대응출원의 청구항1에 "a"를 부가

#### 2. 청구항이 상응하지 않는 경우

사례	대응출원 청구항		본원출원 청구항		청구항 상응 관계
	청구항	구성요소	청구항	구성요소	
사례5	1	A 물건	1	A' 방법	대응출원은 물건인데 비해 본원출원의 청구항은 방법이므로, 양 청구항은 카테 고리가 상이
사례6	1	A+B	1	A+C	본원출원의 청구항과 대응출원의 청구항 이 구성요소가 상이

### 【붙임4】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 면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2. 31>

【서류명】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대상국가등】

【본원출원번호】

【대응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제출서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범위】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

【서류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번역문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심사관련통지서】

【서류명 및 통지일】

【서류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번역문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심사단계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해당출원의 청구항 번호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 기재요령

1. **【대상국가등】** 란에는 한국 특허청이 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국가등(고시 제4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국가등: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오스트리아, EPO, 호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중 어느 한 대상국가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본원출원번호】** 란에는 본원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본원출원번호】** 10-2014-0001234호, 2014. 1. 1., 2014. 1. 1.
3. **【대응출원번호】** 란에는 위 대상국가등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대응출원번호】** JP 평18-1234호, 2014. 1. 1., 2014. 1. 1.
4.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란에는 본원출원과 위 대응출원 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응출원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대상국가등의 출원뿐만 아니라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대상국가등의 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도 포함됩니다.  
예)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대응출원 JP 18-1234은 본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KR10-2008-12345)이 조약 우선권주장하고 있는 상대국 출원 JP 17-5678의 분할출원으로서 본원출원의 대응(패밀리)출원에 해당합니다.
5.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범위】** 란에는 대상국가등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명 및 제출 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가.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 란에는 해당 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의 종류와 제출일, 공보발간된 경우 공보번호와 공개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 나. **【서류제출여부】** 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등]을 통해 해당 청구범위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 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 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다. 해당 청구범위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 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 란에 ‘제출

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청구범위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서류명 및 발행일】 JP2000-123456(2000.01.0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예2) 【서류명 및 제출일】 보정서, 2009.06.25자로 일본특허청에 제출

【서류제출여부】 제출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6. 【심사관련 통지서】란에는 대응출원에 대한 대상국가등의 심사관이 통지한 실제심사 관련 서류명(거절결정서, 등록결정서, 의견제출통지서 등)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통지일】란에는 실제심사와 관련하여 통지된 서류의 명칭, 통지일 등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심사관련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등]을 통해 해당 심사관련 통지서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통지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통지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및 통지일】 특허사정서, 2008.12.30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7. 【심사단계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 란에는 심사관련 통지서에서 기재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 란에는 인용된 선행기술문헌의 종류, 공개일(공보일)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 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 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 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1) 【명칭】 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예2) 【명칭】 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8.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대응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1	양 청구항은 동일
2	2	"
3	3	"
4	1	청구항 4는 대응출원의 청구항 1의 A라는 구성을 한정함
5	6	"
6	4	"
7	1	청구항 7은 대응출원의 청구항 1에 B라는 구성이 부가됨

## 【붙임5】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 면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 12. 31>

【서류명】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대상국가등】

【본원출원번호】

【국제출원번호】

(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 )

【제출서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범위】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

【서류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번역문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

【서류명 및 통지일】

【서류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번역문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

※ 기재요령

1. **【대상국가등】** 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대상국가등(고시 제4조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국가등: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노르딕특허기구(NPI), 러시아, EPO, 캐나다, 핀란드, 호주, 스웨덴) 중 어느 한 대상국가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본원출원번호】** 란에는 본원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본원출원번호】** 10-2014-0001234호, 2014. 1. 1., 2014. 1. 1.
3. **【국제출원번호】** 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되고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한정, 삭제 또는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청구항을 포함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 PCT/US2014/123456, 2014. 1. 1., 2014. 1. 1.
4.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 란에는 본원출원이 대응국제출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1)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대응국제출원의 분할출원이 본원출원에 해당합니다.  
예2)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 본원출원은 대응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에 해당합니다.
5.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범위】** 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명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 란에는 해당 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의 종류와 제출일, 공보발간된 경우 공보번호와 공개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 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청구범위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 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 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청구범위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 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 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합니다.

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청구범위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서류명 및 발행일】 WO/2011/123456(2011. 1. 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예2) 【서류명 및 제출일】 보정서, 2011. 1. 1자로 국제사무국에 제출

【서류제출여부】 제출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6.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명(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통지일】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통지된 서류의 명칭, 통지일 등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통지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통지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및 통지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011. 1. 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7.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란에는 인용된 선행기술문헌의 종류, 공개일(공보일)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1) 【명칭】 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예2) 【명칭】 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8.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1	양 청구항은 동일
2	2	”
3	3	”
4	1	청구항 4는 대응 청구항 1의 A라는 구성을 한정
5	6	”
6	4	”
7	1	청구항 7은 대응 청구항 1에 B라는 구성이 부가됨

9.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

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국가등이 중국인 경우(중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만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제8기재란의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는 '청구항 제X항은 청구항 제Y항의 A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기 A는 청구항 제Y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X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Z항은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Y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W항의 B를 인용하도록 보정되었으므로, 상기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서 청구항의 지시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는 해소되었습니다.



**【붙임6】 각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심사정보열람시스템**

특허청	심사정보 열람시스템 명칭	웹페이지 주소
노르웨이	NIPO	<a href="http://dbsearch2.patentstyret.no/AdvancedSearch.aspx?Category=Patent">http://dbsearch2.patentstyret.no/AdvancedSearch.aspx?Category=Patent</a>
덴마크	PVS online	<a href="http://onlineweb.dkpto.dk/pvsonline/patent?action=1&amp;subAction=front&amp;language=GB">http://onlineweb.dkpto.dk/pvsonline/patent?action=1&amp;subAction=front&amp;language=GB</a>
독일	DPMAregister	<a href="http://register.dpma.de/DPMAregister/pat/einsteiger">http://register.dpma.de/DPMAregister/pat/einsteiger</a>
미국	Public PAIR	<a href="http://portal.uspto.gov/pair/PublicPair">http://portal.uspto.gov/pair/PublicPair</a>
스웨덴	Swedish Patent Database	<a href="http://www.prv.se/spd/search?lang=en">http://www.prv.se/spd/search?lang=en</a>
스페인	INVENES	<a href="http://invenes.oepm.es/">http://invenes.oepm.es/</a>
영국	IPSUM	<a href="http://www.ipo.gov.uk/p-ipsum.htm">http://www.ipo.gov.uk/p-ipsum.htm</a>
유럽(EPO)	European Patent Register	<a href="http://www.epo.org/searching/free/register.html">http://www.epo.org/searching/free/register.html</a>
이스라엘	ILPATSEARCH	<a href="http://www.ilpatsearch.justice.gov.il/UI/AdvancedSearch.aspx">http://www.ilpatsearch.justice.gov.il/UI/AdvancedSearch.aspx</a>
일본	AIPN <sup>5)</sup>	<a href="http://aipn.ipdl.inpit.go.jp/">http://aipn.ipdl.inpit.go.jp/</a>
중국	China Patent Inquiry System	<a href="http://cpquery.sipo.gov.cn/">http://cpquery.sipo.gov.cn/</a>
핀란드	PatInfo	<a href="http://patent.prh.fi/patinfo/default2.asp">http://patent.prh.fi/patinfo/default2.asp</a>
헝가리	E-Dossier	<a href="http://epub.hpo.hu/e-aktabetekintes/?lang=EN">http://epub.hpo.hu/e-aktabetekintes/?lang=EN</a>
호주	AusPat	<a href="http://pericles.ipaustralia.gov.au/ols/auspat/">http://pericles.ipaustralia.gov.au/ols/auspat/</a>
WIPO	Patentscope	<a href="http://www.wipo.int/pctdb/en/index.jsp">http://www.wipo.int/pctdb/en/index.jsp</a>

5) 인증받은 특허청에 대해서만 심사정보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 특허청 심사관의 경우 열람이 가능함

**【붙임7】 실체심사와 관련한 대상 특허청의 심사통지서**

대상 특허청	심사통지서
노르웨이	Granted Patent Publication and/or in the office action entitled "Godkjenning til meddelelse" (Decision to Grant), "Uttalelse" or "Realitetsuttalelse" (Office action)
덴마크	Granted Patent Publication and/or in the office actions entitled: "Godkendelse" ("Grant" in English version letter), "Berigtigelse af bilag" ("Intention to Grant" in English version letter), "Resultatet af din n. tekniske behandling af din patentansøgning" ("nth technical examination of your patent application" in English version letter)
러시아	Granted Patent Publication and/or Office action: "Letter of inquiry" (Запрос экспертизы), "Conclusion upon the examination" ( Уведомление о результатах проверки пат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 and a "Decision to Grant a Patent" (Решение о выдаче патента).
미국	US Letters Patent or in an Office action. A USPTO Office action includes a "Non-Final Rejection", "Final Rejection", "Ex parte Quayle", and a "Notice of Allowability".
스페인	Granted Patent Publication and/or in the "Resolución de concesión con examen previo de la solicitud de patente" (Granting decision) as part of the substantive examination procedure.
아이슬란드	Granted Patent Publication and/or an Office Action entitled: "Tilkynning um veitingu einkaleyfis" (e. Notification of Grant) or "Fyrirhuguð útgáfa einkaleyfis" (e. Intention to Grant).
영국	Notification of Grant letter
유럽(EPO)	(i)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ii) European Search Report (iii) European Search Opinion (iv) Examination Report
	※ Claims are determined to be allowable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i) a communication regarding the intention to grant a European patent was issued. (The heading of the communication is "Communication under Rule 71(3) EPC") (ii) if the communication under (i) has not been issued yet, a positive opinion regarding the allowability of the claims is contained in the European Search Report, i.e. neither category X documents (including category PX, EX and OX documents) nor category Y documents (including category PY, EY and OY documents) are cited as to the claims.

<IP5 PPH 및 글로벌 PPH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절차(2014.1.6.)>

이스라엘	"Notice of objec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41", "Guide to submitting patent applications" mentioning that claims have been allowed, "Notice before acceptance of patent application".
일본	Granted Patent Publication and/or in an Office action. A JPO Office action includes a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and a "Decision to Grant a Patent".
중국	(i) 특허 결정서(Decision to Grant a Patent) (ii) 심사의견 통지서(First/Second/Third/... Office Action) (iii) 거절 결정서(Decision of Refusal) (iv) 재심사 결정서(Reexamination Decision) (v) 무효 결정서(Invalidation Decision)
캐나다	Granted Patent Publication or an Office Action (Notice of Allowance, Examiner's Report or Final Action Report)
포르투갈	Search Report with Written Opinion (Relatório de Pesquisa com Opinião Escrita) where the claims are explicitly identified as patentable, Examination Report (Relatório de Exame) and Grant Publication (Publicação da Concessão).
핀란드	Granted Patent Publication and/or an Office action("Office action" or "Communication of Acceptance", in Finnish these are entitled "Välipäätös" or "Hyväksyvä välipäätös")
헝가리	Written Opinion (Írásos vélemény, Letter Code '77') where the claims are explicitly identified as patentable or allowable, Letter relating to Intention to Grant (Letter Code 'SM').
호주	A published Accepted or Granted Standard Patent and/or in an office action. An IP Australia office action includes an "Examination Report", "Notice of Acceptance" and a "Notice of Grant/Sealing"